

## 실습선 선박평형수 법령 적용에 관한 고찰

윤귀호\* · 이윤석\*\*†

\* , \*\* 한국해양대학교

### An Study on Applying Laws related to Ballast Water of Training Ship

Yun, Gwi-Ho\* · Lee, Youn-Suk\*\*†

\* , \*\*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

핵심용어 : 선박평형수, 국제해사기구, 협약, 실습선, 청수

Key Words : Ballast water, IMO, Convention, Training ship, Fresh water

### I. 선박평형수 협약 현황

#### 선박평형수 협약 채택 및 발효

**1. 선박평형수 협약 채택 배경**

- 선박의 다양한 지역 항해
- 조선기술 발달에 따른 선박운항시간 단축으로 선박평형수 내 생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짐.
- 평형수에 의한 생물 이동으로 해역 환경과 생태계 교란
- 연안 산업이나 다른 상업적 활동 및 자원에 큰 피해 유발
- 폐쇄 시장
- 미국 : 해외에서 70종의 수중 생물 유입으로 약 970억 달러 손해(1909~1991)
- 오대호 : 원류줄무늬 담치 유입으로 연간 50억 달러 피해. 이외에 해외에서 15종의 수중 생물 유입으로 2060년까지 1,840억 달러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호주 : 경은증 무너남지 유입으로 연간 2억만 달러 피해. 1988년까지 전주 양식선업에 1,800억 달러 손해 발생

### II. 선박평형수 국내 법령 현황

#### 선박평형수 국내 법령

**2.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적용**

- 이 법은 대한민국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적용
-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
-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
  - 선박경수를 실을 수 없도록 건조된 선박
  - 군함 및 경관용 선박
  - 다수의 목적에 모두 해당하는 소형 선박  
가. 선박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  
나. 수레, 경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
  -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 선박
  - 교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선박
  -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첨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

### I. 선박평형수 협약 현황

#### 선박평형수 협약 채택 및 발효

**5. 선박평형수 협약 적용**

- 적용
  - 평형수를 적재하도록 설계되고 건조된 모든 선박
- 다음의 선박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.
  - 평형수를 적재하도록 설계 또는 건조되지 아니한 선박
  - 선박으로부터 평형수의 배출이 인정국 또는 다른 국가들의 환경, 인간 건강, 재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협약 당사국이 결정한 경우로서 협약 당사국의 관할권 해역 내에서만 적용으로 운항하는 선박
  - 군함, 해군 보조함 또는 당시 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기타 선박으로서 당분간 정부의 비상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
  - 선박의 짐봉된 맹크에 적재된 배출한 수 없는 영구적인 평형수를 지닌 선박

### IV. 실습선의 선박평형수 법령 적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
#### 문제점

**1. 선박평형수 관리법과 협약의 적용 범위 차이**

- 선박평형수 관리법과 협약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협약에는 “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기타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내 법령에는 명시 규정이 없음.
- 실습선은 상기 조항에 해당이 되어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님.
- 하지만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르면 적용 대상임.

**2.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설치를 위해 많은 예산 소요**

-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모든 실습선에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 예산이 소요
- 하지만,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리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실습선의 특성상 해당 장치를 사용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음.

\* First Author : captyun@kmou.ac.kr, 051-410-4201

† Corresponding Author : lys@kmou.ac.kr, 051-410-4471